

[서식 예] 재정신청서

재정신청서

피신청인(피의자)에 대한 ○○지방검찰청 20○○형제 ○○○호 불법체포·감금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, 동 검찰청 소속 검사 □□□이 20○○. ○. ○. 한 불기소처분(무혐의 처분)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(200○불항○○○호)하였으나 ○○고등검찰청 검사○○○은 200○. ○○. ○○.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.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○○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: 2000.0.0.

신 청 취 지

피의자 △△△에 대한 ○○지방검찰청 ○○ 형제 ○○○호 불법체포·감금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△△△을 ○○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이 유

- 피의자 △△△의 범죄사실 별지기재와 같음
- 2. 피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



별지기재와 같음

3.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,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부서류

1. 피의사실 및 증거내용1통2. 불기소처분통지서1통3. 기타 증거서류 사본2통

2000년 0월 0일

재정신청인(고소인) ○ ○ ○ (인)

○ ○ 고 등 법 원 귀 중



제출기관	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	제출기간	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
	지방검찰청 또는 지청		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
신 청 인	○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○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 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 한 자도 가능	관 할	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 등법원
제출부수	· 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260~264조
불복방법	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	사소송법 제4	 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
	수 있고,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. 신청기각의 결정		
	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		
	고는 소추할 수 없음(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).		
공소제기 결정효과	·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		
	로 간주(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)		
	•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		
	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		
	(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) • 항고전치주의		
기 타	-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		
	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,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		
	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		
	· 항고전치주의의 예외		
	○ 영고전시구의의 에의 -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		
	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		
	-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		
	경과한 경우		
	-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		
	경우		
	·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		
	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음		